

2025

항만교통안전관리자 등 선박입출항법

엠북 해양법규

공부혁명!
mbook.kr

- ★ 스마트폰 수험총서
- ★ 38분 완성
- ★ 법, 시행령/시행규칙(일부) 종합
- ★ 최근 법령 개정 내용 반영

도서명 : 선박입출항법

ISBN : 979-11-7393-060-7

발간일 : 2025-08-07

형식 : 스마트폰용 전자책(PDF)

저자 : 엠북

출판사 : 엠북

홈페이지 : <https://www.mbook.kr/>

이메일 : by4782@gmail.com

정가 : 6,000원



선박입출항법

(선박의 입출항 등에 관한 법률, 이하 법)

[목차]

제1장 총칙(p5)

제2장 입항/출항 및 정박(p11)

제3장 항로 및 항법(p20)

제4장 삭제

제5장 예선(p27)

제6장 위험물의 관리 등(p40)

제7장 수로의 보전(p52)

제8장 불빛 및 신호(p60)

제9장 보칙(p61)

제10장 벌칙(p68~75)

[법상 용어]

시도지사는 특별시장, 광역시장, 도지사,
특별자치도지사

[약어]

장관은 해양수산부장관

입출항은 입항, 출항

정박등은 정박, 정류

협의회는 예선운영협의회

청장은 해양경찰청장

[비고]

회색 형광펜은 법조문 제목

검은색은 법

보라색은 시행령

갈색은 시행규칙

(Copyright) 공부혁명 엠북(mbook.kr)

제1장 총칙

1~3조

1. 목적

- 수상구역 등에서 선박 입출항 지원,
선박운항의 안전과 질서 유지에 필요한 사항
규정

2. 정의

가. 무역항

- 국민경제와 공공의 이해에 밀접한 관계가 있고, 주로 외항선이 입출항하는 항만

나. 무역항의 수상구역등(이하 수상구역등)

- 무역항의 수상구역(이하 수상구역)과 수상구역 밖 수역시설로서 관리청이 지정/고시한 것

다. 관리청

- 수상구역등에서 선박 입출항 등 행정업무하는 다음 행정관청
- 국가관리무역항은 장관

· 지방관리무역항은 시도지사

라. 예선

- 예인선 중 무역항에 출입, 이동하는 선박을 끌어당기거나 밀어서 이안, 접안, 계류를 보조하는 선박

마. 우선피항선

-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해야 하는, 주로 수상구역에서 운항하는 다음 선박

1) 부선

- 예인선이 부선을 끌거나 밀고 있으면
예인선과 부선 포함

- 예인선에 결합되어 운항하는 압항부선은 제외

2) 주로 노와 샷대로 운전하는 선박

3) 예선

4) 항만운송관련사업 등록한 자 소유 선박

5) 해양환경관리업이나 해양폐기물관리업
등록한 자 소유 선박

- 폐기물해양배출업으로 등록한 선박은 제외

6) 상기 이외 총톤수 20톤 미만 선박

바. 정박

- 선박이 해상에서 닻을 바다 밑바닥에
내려놓고 운항 멈춤

사. 정박지

- 선박이 정박할 수 있는 장소

아. 정류

- 선박이 해상에서 일시 운항 멈춤

자. 계류

- 선박을 다른 시설에 붙들어 매어 놓음

차. 계선

- 선박이 운항을 중지하고 정박/계류

카. 항로

- 선박의 출입 통로로 이용하기 위해

지정/고시한 수로

타. 위험물

1) 화재/폭발 등 위험 있거나 인체, 해양환경에 해 끼치는 다음 물질

- 화약류, 고압가스, 인화성 액체류, 가연성 물질류, 산화성 물질류, 독물류, 방사성 물질, 부식성 물질, 유해성 물질
- 산적액체위험물

2) 선박 항행, 인명의 안전을 위해 해당 선박에서 사용하는 위험물은 제외

파. 위험물취급자

- 위험물운송선박 선장과 위험물 취급하는 자